

I. 서설 – 이슬람법의 특징과 모로코

II. 모로코 사법체계의 개관

1. 모로코 헌법 개정상 특징
2. 모로코 사법체계의 특수성
3.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로의 수렴
4. 사법제도 운영의 기본 원리

III. 모로코의 사법기관

1. 헌법재판소의 권한
2. 주요 사법기관
3. 기타 특수법원: 특수 사안을 취급하는 별도 법원
4. 법조인

IV. 대체적 분쟁해결절차(ADR: Alternative Dispute Settlement)

V. 결론

I. 서설 – 이슬람법의 특징과 모로코

그간 이슬람 국가, 나아가 이슬람 법체계에 대한 관심이 적어 이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슬람 세계에 대한 관심이 미국의 테러사건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전쟁과 더불어 사무엘 헌팅턴이 주장했던 문명의 충돌 현상의 본격화로 말미암아 고조되었고, 급기야 이슬람 문화를 직

모로코의 사법체계

김 용 훈
(한국법제연구원)

[특집 VI]

G20 정상회의의 개최를 통하여 한국에 대한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카교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의 글로벌화로 인하여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기초법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본 특집을 편성하였습니다.

접적으로 반영하는 이슬람법에 대한 관심 역시 고조되고 있다.¹⁾

이슬람법은 불변적이라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슬람법은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역사의 흐름이나 상황변화에 따라 법의 해석이나 적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법은 알라의 의지의 반영이므로 그 내용은 국가와 사회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간사 생활 전 영역에 걸쳐져 있다고 평가받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사항에 천착한다면 새로운 법의 창설은 있을 수 없게 된다.²⁾

모로코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왕국 중 하나로 788년에 최초의 통일왕조가 수립된 후 수차 왕조가 바뀌면서 왕국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1665년부터 알라위트(Alaouite) 왕조가 현 Mohamed 6세 국왕(1999. 7. 30. 즉위)까지 중단 없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전통적인 왕정 국가이다. 1962년 12월 14일 헌법 제정 등으로 입헌군주국을 표방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왕은 총리 임명권과 총리의 제청에 의한 각료 임명권, 나아가 헌법재판소 재판장 임명권 등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인 입헌군주국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각료 중 국방장관은 국왕이 겸임하며, 내무, 외교, 이슬람장관은 국왕이 지명한다. 의회는 제4차 헌법 개정(1996. 9. 13.)에 따라 상원(Chambre des Conseillers) 및 하원(Chambre des Representants)으로 구성된 양원제로 이루어져 있다.

II. 모로코 사법체계의 개관

1. 모로코 헌법 개정상 특징

모로코의 법제 역시 이슬람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스페인의 대륙법 계통 시민법 제도를 가미하고 있을 뿐이다.³⁾ 법원은 1심 재판소와 1심 지방법원, 2심 항소법원, 최고법원으로 구성된다. 1심 지방법원은 전국 도시에 183개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의 고등법원과 같은 2심 항소법원은 전국 주요 도시에 21개가 설치되어 있다. 최고법원은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같으며, 수도인 라바트에 있다. 그 밖에도 행정법원, 군사법원과 가족법, 상속, 노동분쟁 등을 다루는 민사

1) 박규환, “이슬람법질서의 공법적 구조분석 - 샤리야 법과 헌법 그리고 국가조직법”, 공법학연구 제10권 3호, 147면.

2) 강경선, 비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0, 185면.

3) 외교통상부(주모로코 대사관), 모로코 개황, 2010.9, 62면.

1심 특별법원, 지방 관리나 중앙정부 공무원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특별법원 등의 특수법원이 있다.

그런데 최근 모로코의 국민투표를 통하여 헌법 개정안이 채택되어 모로코의 전반적인 통치체계가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⁴⁾ 투표에 의하여 채택된 새 헌법의 내용에 따르면 국왕은 국가의 수장이자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는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당에서 선출되며, 정부를 관할한다. 또한 모로코는 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국회를 주축으로 운영되며, 사법부가 독립되고 다양한 국가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사항이 헌법에서 선언되고 있다. 그러므로 모로코 사법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위해서는 당해 헌법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모로코 사법체계의 특수성

통상적으로 사법의 독립은 권력분립을 이루는 중추적 요소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특징적 징표를 이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요소를 이루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법의 적용과 집행에서의 편파성을 제거하고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므로 이는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에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⁵⁾ 이는 군주가 군림하는 입헌군주국이라고 하여 예외가 아니다. 군주가 상징적인 존재로만 기능하여 당해 국가 역시 실질적으로는 민주국가로 볼 수 있는 것이다.⁶⁾ 입헌군주국의 대표격이라고 볼 수 있는 영국도 ‘수상정부제’라도 불릴 정도로 국왕이 아닌 수상을 중심으로 그 통치체제가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⁷⁾ 따라서 앞서 본 사법부의 독립은 입헌군주제의 경우에도 당연히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모로코의 경우에는 국왕의 지위가 통상적인 지위로 머무르지 않고 있다. 즉 입헌군주제의 정체를 가지고 있지만 모로코 국왕은 3권을 초월하는 지위

-
- 4) 수천 명의 시위자와 모하메드 6세 국왕이 제안한 당해 헌법개정안에 대한 반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모로코의 3개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졌으며, 가장 큰 규모의 시위는 모로코 북부의 딴좌(항구도시)에서 벌어졌으며, 무려 12,000여 명의 시위자들이 1시간에 걸쳐 대대적인 개혁을 위하여 국왕에 대한 항의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반대자들은 국왕이 보다 많은 권한을 이양하여야 하며, 정부의 부패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http://aljazeera.net/NR/exeres/6ECD1990-2D4E-41B8-B0C1-2DB917FC34FF.htm?GoogleStatID=9>, 방문 2011. 9. 19).
- 5)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9, 1330면.
- 6) 정종섭, 위의 책, 13면.
- 7) 이에 따라 영국의 경우에는 ‘국왕이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격언이 유행하는 것이다.
-

를 향유하고 있다. 즉 국왕은 종교최고지도자(Amir Al-Mouminine), 국가 원수, 국가 통일의 상징 및 국가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이슬람과 국헌의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향유한다고 여겨지며, 행정, 사법, 입법 등 3권에서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의를 주재하고 법률을 공포하며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왕은 군 참모총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군·민 관리임명, 대사임명, 조약 비준권, 사면권 및 비상사태 선포권까지 보유하고 있기까지 하다.⁸⁾ 이에 따라 모로코의 사법제도의 경우에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염격히 확보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3.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로의 수렴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로코 역시 이슬람법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해 법체제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보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슬람법은 일상적 사회적인 인간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까지도 상세하게 지시하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슬람법의 지시에는 종교성과 윤리성이 섞여 있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 이슬람에서는 종교적인 가치기준과 윤리적인 그것이 각각 구분을 가지면서도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법과 윤리’는 염격하게 구분이 되지 않으며 신의 말씀인 꾸란이라는 동일한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⁹⁾ 이로 인하여 이슬람 국가에서 국왕은 초입헌주의적 권한을 향유할 수 있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2011년 9월 현재 아프리카에는 민주화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이는 모로코라고 예외가 아니다. 앞서 잠시 본 바와 같이 모로코도 튀니지와 이집트에서의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대국민시위의 영향을 받아 전국민적 시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모로코 정부 역시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국민주권의 실질화를 담보하는 실제적인 입헌주의의 확립 욕구 역시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헌법은 단순한 자유의 기술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기술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법규법¹⁰⁾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로코 국민들의 열망은 헌법 개정의 요구로 이어졌고, 급기야 최근 헌법 개정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국민주권이 의회주권으로, 의

8) 외교통상부(주모로코 대사관), 모로코 개황, 2010.9, 13면.

9) 한동훈·이원삼·안수현, 이슬람법이론 및 금융법제, 한국법제연구원, 2009, 19~20면.

10)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1, 1233면.

회주권이 법률주권으로 인식되던 전통적 사고는 헌법 나아가 헌법, 재판을 통하여 불식되었듯이 모로코의 경우에도 헌법재판, 특히 헌법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모로코의 헌법 조항 수가 이전의 108개에서 180개로 대폭 확대된 것과 기본권 관련 조항도 상당 정도 반영이 된 것은 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로코의 사법제도 역시 이와 같은 갈등 상황을 감안하고 조망하면서 고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4. 사법제도 운영의 기본 원리

1) 권력분립원리를 통한 사법부의 독립 보장

모로코 정치체계는 위와 같은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타 국가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운영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¹¹⁾ 모로코의 헌법에 의하면 모로코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3권 분립에 기반한 국가체제를 채택하고 있는데,¹²⁾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헌법 제107조는 사법권의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헌법은 모로코 국왕에게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¹³⁾ 독립성이 침해받았다고 판단한 판사는 사법부 최고위원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였고, 나아가 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준수 의무의 위반은 중대한 책임으로 간주하고 있다.¹⁴⁾ 특이한 점은 각 국가기관의 관할권과 권한을 독립적으로 규정한 것에 그치지 않고 왕과 입법권 간 관계와 입법권과 집행권 간 관계에 대해서도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⁵⁾

2) 행정부와 입법부 및 사법부와 입법부 간 관계

우선 정부수반은 공공정책의 공개와 법안제출에 있어 의회(하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데, 하원 절대 과반수에 의하여만 불신임되며 역시 하원의 절대 과반수가 아니면 제출된 법안은 채택되지 않는다. 그리고 정부 수반에 대한 불신임 표결

11) 개정 헌법 제1조에서 권력분립·균형과 협력의 원칙이 선언되어 있다(이하 모로코 개정 헌법은 ‘헌법’이라고 명명).

12) 입법권은 헌법 제60조에서 제77조까지, 집행권은 제78조에서 제94조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사법권은 제107조에서 제134조까지 각각 독립하여 규정되어 있다.

13) 헌법 제107조.

14) 헌법 제109조.

15) 전자는 헌법 제95조~제99조, 후자는 헌법 제100조~제10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통과되면 정부는 집단 사퇴하여야 한다.¹⁶⁾ 이에 대하여 정부수반은 각료회의(the Council of Minister)의 칙령에 의한 의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는데, 당해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왕, 하원 의장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장과 먼저 논의하여야 한다.¹⁷⁾ 그리고 하원은 정부에 대하여 5분의 1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탄핵소추안을 부의할 수 있는데, 이는 하원 절대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하원이 정부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제기하면 그 정부에 대하여 1년의 기간 동안 탄핵소추를 제기할 수 없다.¹⁸⁾ 나아가 참의원은 정부에 대하여 설명요구권을 보유하고 있다.¹⁹⁾ 이와 같이 모로코 행정부와 입법부 간 관계는 모로코 정치체제가 의원내각제라는 것을 잘 보여 준다. 나아가 한편으로는 사법부의 구체적인 운영이 입법부가 제정하는 다양한 법률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사법부, 특히 헌법재판소가 입법부의 법률에 대한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로코 통치구조상으로는 일정하게 상호 견제와 균형이 달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헌법상으로 사법권의 독립성이 재차 친명되고 있음을 물론이다.

그러므로 모로코 헌법상으로 권력분립원칙이 일응 도입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다. 하지만 3권 모두 국왕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아가 국왕은 3권에 대하여 전적인 우위의 지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모로코 통치구조상 권력분립이 완전히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소송법적 특징

모로코의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아닌 판사가 주도하기 때문에 1심 재판에서 판사는 소송절차를 지휘하며, 소송에서 조사와 결정을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판사는 전문가의 도움을 요구할 수 있으며, 문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조사도 수행할 수 있다. 상소법원에서도 판사는 소송을 지휘하며 필요한 서류의 제출과 기소를 요구할 수 있다. 나아가 최고법원에 권한 있는 부의 재판장은 소송절차를 수행하는 공보관(reporting counselor)을 임명할 수 있다.

그리고 모로코 형사소송절차는 공정한 기소와 피고인의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중대한 절차원칙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정 사건에 있어서의 특별법관제도, 형벌중재제도, 범죄에 대항하는

16) 헌법 제103조.

17) 헌법 제104조.

18) 헌법 제105조.

19) 헌법 제106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수단의 확보, 형사부의 결정에 대한 상소권 보장 그리고 형 선고 집행에 있어서의 판사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기도 하다.

III. 모로코의 사법기관

모로코 사법기관은 모로코 왕국의 모든 재판소와 법원을 포함한다.²⁰⁾ 나아가 사법부는 심급제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특별법원을 두어 특정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전문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그런데 기왕에 있었던 헌법 개정에서 주목할 것은 이번 개정 헌법이 헌법재판(소)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전에도 헌법위원회(the Constitutional Council)가 존재하고 있었지만²¹⁾ 원칙적인 사항만을 담고 있는 4개의 규정만이 존재하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개정 헌법의 경우에는 이를 헌법재판소로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6개의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아프리카 대륙에 부는 민주화의 바람에 따라 모로코 사법체계에 있어 국민주권의 실질화를 보여 주는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한다.

1. 헌법재판소(the Constitutional Court)의 권한

1) 구성

헌법재판소는 9년의 임기인 12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연임이 허용되지는 않는다. 이 중 6명의 재판관은 국왕에 의하여 지명되며,²²⁾ 나머지 6명의 재판관은 민의원과 참의원에 의하여 선출된다. 나아가 각 재판관은 각 3분의 1씩 3년마다 교체되며, 이 중 재판장은 재판관 중에서 국왕이 임명한다. 각 재판관은 공정성(impartiality)에 있어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청렴하여야 하며, 나아가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2) 위헌법률심사제도 – 규범통제권한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기능과 운영 절차뿐만 아니라 재판관의 사망·사임에 따

20) http://www.justice.gov.ma/an/OrganisationJudiciaire/organisation.aspx?_o=0, 2011.9.19. 방문.

21) 구 헌법 제78조~제81조.

22) 이 중 한 명은 종교지도자(the Ulemas) 최고위원회의 사무총장에 의하여 제안되어야 한다(헌법 130조).

른 재판관 교체에 대한 사항은 이전의 경우와 같이 조직법(an organic law)에 유보되어 있다.²³⁾ 헌법재판소는 의원 당선과 국민투표 운영의 유효성에 대하여 심사하며, 조직법은 공포 전에, 그리고 상·하 의원의 규칙은 집행 전에 헌법재판소에 제청되어 헌법과의 상충 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즉 헌법재판소는 헌법 하위 법령에 대한 사전심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 법률의 경우에도 국왕, 수상, 상·하 의원, 의장 나아가 상·하 의원 의원의 4분의 1의 찬성으로 공포·비준 이전의 특정 법률은 헌법재판소에 제청될 수 있다.²⁴⁾

3) 헌법소원제도 – 기본권 보장 권한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소송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경우 당해 소송 중 그 위헌성에 대한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역시 조직법에 유보되어 있다.²⁵⁾

이 또한 의미하는 바가 작지 않다고 생각된다. 통상적으로 헌법재판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기본권의 보장을 들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²⁶⁾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기능은 헌법 소원제도를 통하여 구체화된다. 독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공권력 행사와 불행사로 말미암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구제를 위한 권한을 헌법소원제도를 통하여 헌법재판소에게 부여하고 있기도 하다.²⁷⁾ 특히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상정하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국회의 입법행위 역시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령소원의 형식으로 이에 대한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모로코 역시 이와 같은 방식의 헌법소원제도를 도입

23) 헌법 제131조.

24) 이는 물론 모로코가 프랑스의 식민지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프랑스 법체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역시 헌법위원회에 의한 위헌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사전적 심사가 주를 이루었다. 즉 사전적 규범통제는 법률의 시행이전에 특정 법률의 위헌 여부를 재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프랑스는 특히 추상적 규범통제를 채택하면서 사전적 규범통제제도를 운영하였다(정종섭, 앞의 책, 1436면). 하지만 최근 헌법 개정으로 사후적인 위헌심사가 도입된 바 있다.

25) 헌법 제133조.

26) 정종섭, 앞의 책, 1388면.

27) 독일은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4호, 한국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하였다고 볼 수 있다.²⁸⁾ 이전 헌법의 경우에는 당해 법령소원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제도적인 측면에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소원을 포함하는 본격적인 헌법소원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의 한계적인 측면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4) 결정의 효력

만일 헌법재판소가 심사법령에 대하여 위헌 선언을 한다면 그 법령은 공포되거나 집행되지 않는다. 나아가 법령소원절차에서 문제된 법령에 대한 위헌선언을 헌법재판소가 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그 법령은 폐지되므로 장래효가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공공기관이나 모든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에 대하여 기속력이 인정된다.²⁹⁾

2. 주요 사법기관

1) 대법원(Supreme Court)

모로코 대법원은 국내 사법구조상 최고의 지위를 점하기 때문에 국내 모든 법원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를 하는 법원이다. 대법원은 민사부(civil status),³⁰⁾ 상속부, 상법부, 행정부, 사회부와 형벌부 등 6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부는 각 부의 의장에 의하여 회의가 진행되며, 몇 개의 과로 구성된다. 이는 명령 등 법규범의 합법성(legality)에 대하여 확인하며, 그에 따라 일관적인 사법 해석을 확보한다. 또한 판사의 월권행위에 대한 구제청구, 대법원을 제외한 법원과 판사에 대한 소송 등에서 관할권을 향유한다. 그리고 형사 사건에서는 범죄와 범행의 이유로 부당하게 기소되어 부당한 취급을 받고 있는 사인에 대한 사법적 과오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재심절차에서의 관할권을 향유하며, 민사 사건에서는 관련 판사가 표시한 사실관계를 자신이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하급심에 제기된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소송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향유한다.

28) 통상적으로 이슬람 헌법의 경우에는 헌법국가라고 지칭되는 경우 당해 국가가 포함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를 내포하고 있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그 통치는 대의제나 다수결의 원리에 따른 통치가 아니라 왕이나 자문회의에 의한 통치라는 점(박규환, 앞의 논문, 163면)을 고려하면 모로코 헌법상으로 도입된 헌법재판제도는 그 합의하는 바가 작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9) 헌법 제134조.

30) 'civil status'란 개인 인생에서의 중요사건의 기록, 즉 시간과 장소를 기록하는 행정제도를 뜻하는데, 이러한 것들로는 출생, 사망, 결혼, 이혼 등이 있다(이원삼, "이슬람의 가족법, 여성권리의 시각에서 본 개혁의 가능성- 모로코의 가족법 변화를 통한 고찰-", 지중해지역연구 제6권 제1호(2004.4.), 100~101면).

2) 1심 재판소(Communal and District Courts)

1심 재판소는 재판소의 클럭(clerk)과 사무국의 원조를 받는 각 1명의 판사로 구성되는데, 특히 판사는 최고사법평의회의 추천으로 3년간 근무한다. 그리고 판사들은 법원 규정에 따라 치안판사들이나 일반 시민들 중에서 임명된다. 비전문적 치안판사나 그들의 대리인들은 선거인단 중에서 혹은 선거인단에 의하여 임명되는데, 특히 선거인단은 1974년 6월 15일에 발포된 칙령에서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해 선거인단에는 복무 중인 공무원이나 oukils, 무슬림 공중인, 상업상의 관리인이 가입할 수 없다.

당해 1심 재판소는 확정된 속달 계약 금액이 2,000DHs(디람)를 초과하지 않는 소송 등과 같이 중요하지 않은 민·형사 사건만을 담당할 수 있는데, 특히 민사, 형사 사건 중 미성년자 사건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자신의 토지 관할의 한계 내에서 1심 재판소의 판사는 재산권에 대하여 가하여지고 있는 현 부담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발할 수 있다. 그러함에도 판사는 재산이나 개개의 규칙 사항에 대한 소송을 심리할 수는 없다.

3) 1심 지방법원(First Instance Tribunals)

1심 지방법원은 전국 도시에 183개의 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재판장, 부재판장 그리고 재판관
- 한 명의 검사와 그의 대행자로 구성되어 있는 검찰부
- 법원 서기국: 검사 사무국

사건에 따라 판사들은 심리를 위하여 소집되며, 당해 법원은 여러 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는 한 명 혹은 수명의 판사들로 구성되며, 재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 장관은 한 명이나 수명의 판사들에게 1심법원의 토지 관할 내에 있는 도시에 영속적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당해 판사는 영주 판사(resident judges)라고 불린다.

1심 지방법원은 법률이 명백히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당해 법원의 권한은 당사자가 무슬림이든 유대인이든, 나아가 외국인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모든 민사, 재산, 형사 그리고 사회적 사건에 미친다. 민사 사건의 경우, 1심 지방법원은 소송

의 금액이 3,000DHs 이하인 경우 최종적인 판결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³¹⁾ 즉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금액기준으로 3,000DHs 및 그 이하에 관하여 1심 지방법원의 관할권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소송의 금액이 만일 3,000DHs를 상회한다면 법원은 단지 주도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뿐이지 당해 결정에 대하여서는 상소를 제기할 수는 있다. 형사사건의 경우 법원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이어서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상소법원의 권한에 속한다. 그리고 가족법의 제정에 따라 친족 사건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는 가정법원과가 창설되었다.

4) 2심 항소법원(Courts of Appeal)

민·형사 항소건을 다루는 항소법원(우리의 고등법원)은 보다 큰 주요도시에 21개의 법원이 설립되어 있으며, Casablanca, Fès, Marrakech 3개 도시에는 상사분쟁을 취급하는 항소법원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친족·가족부와 형사부와 같은 수개의 특별부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법원에는 검사와 그의 대행인, 수사를 행하는 판사, 중요하지 않은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있으며, 나아가 법원은 법원 서기국과 검사 사무국 역시 보유하고 있다. 법원에 부여된 중요한 사건의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며,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패널에 의하여 판결이 부여된다.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 법원의 형사부는 의장과 4명의 고문 판사로 구성된 5명 패널에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법원은 형사소송, 민사 1심 법원의 상고 사건 등을 다루는데, 특히 1심 법원에서 심리되고 판결된 소송에 대한 상소와 재심을 담당한다. 상소법원의 형사부는 1심과 최종심에서 범죄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는 특별 기관(special institutions)을 구성한다.

3. 기타 특수법원: 특수 사안을 취급하는 별도 법원

모로코 사법제도상으로는 특수법원이 존재하는데, 먼저 행정법원(Administrative Tribunals)을 들 수 있다. 이는 행정부에 대한 고소, 행정 계약이나 공권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담당하는 법원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행정기관의 조치에 대한 취소소송, 행정계약과 관련된 분쟁, 공공단체에 의한 손실보상 청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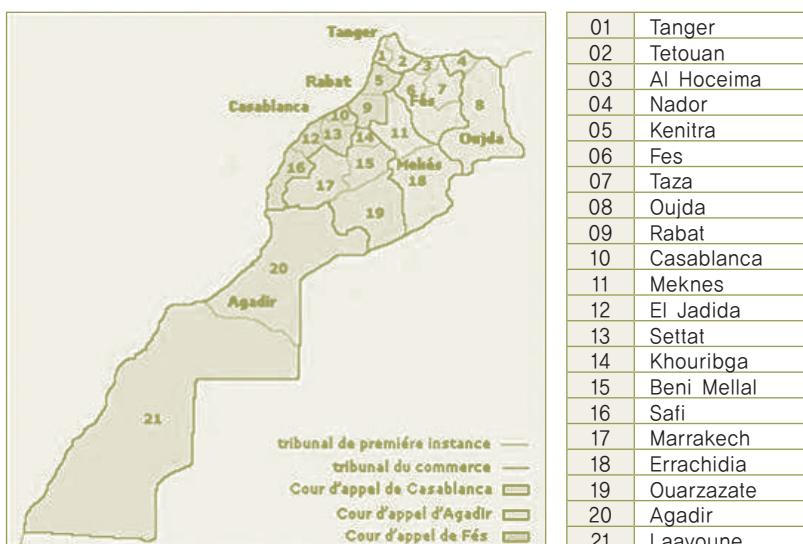
31) 하지만 판결(judgement)이 아닌 결정(decision)의 경우에는 최고 법원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

있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행정청 조치의 법규 적합성을 확보하는 기능 역시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가족법, 상속, 노동분쟁 등을 다루는 민사 1심 특별법원(Tribunals of Original Jurisdiction)과 지방 관리나 중앙정부 공무원의 횡령, 배임 등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별도 특수법원인 특별법원(Special Court of Justice)도 있다. 군사 법원(The Standing Tribunal of the Royal Armed Forces)은 군인에 의한 위법행위나 허가받지 않은 무기 거래행위에 대한 관할권을 향유하는 법원이다.

나아가 회계감사원(The Audit Court)은 회계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를 수행하는 법원으로 예산 수령과 비용처리의 건전한 집행을 확보하며 법에 의한 통제하에 있는 기관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행하는 기관이다. 필요하다면 회계감사원은 당해 운영을 규율하는 법규의 위반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³²⁾ 결국 회계감사원은 자신의 직무범위 내에서 의회와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특별법원이라고 할 수 있다.³³⁾

각 법원의 관할지역은 다음과 같다.



출처: 외교통상부(주모로코 대사관), 모로코 개황, 2010. 9, 64면.

-
- 32) 우리 감사원의 경우 변상책임 유무의 판정권, 징계 등의 요구·권고권 등과 같이 다소 제한적인 기능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로코 회계감사원은 회계검사에 있어서는 보다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모로코 회계감사원은 직무감찰에 대한 정식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직무범위에 있어서는 우리의 감사원보다는 작다고 할 수 있다.
- 33) 이상 http://www.nyulawglobal.org/Globalex/Morocco.htm#_C_The_Judicial_Power 참조(2011. 9. 20 방문). 이 외에도 경제·사회 이사회(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가 있는데, 이는 정부와 참·민의원의 도움을 받아 국가적인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수반하는 일반 지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



4. 법조인

1) 변호사

모로코에서는 법학사를 취득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야 변호사, 공증인 혹은 집행관이 될 수 있다. 시험을 통과한 후 그들은 법조인과의 개별적인 계약에 기하여 동 직종의 사람들과 함께 일정 기간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 수습 기간 중 변호사의 전문적인 기술 향상에 대한 공식적인 감시체계, 그리고 변호사가 수습 후 도달하여야 하는 능력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수습의 기간과 강도는 다양하다. 1993년도에 통과된 법에 따르면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교육 센터의 설립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아직 설립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사법연수대학(*Institut National des Etudes Judiciaires: I.N.E.J.*)에서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과정을 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해 사법연수대학은 공증인 전문 학위('certificat d'aptitude aux fonctions notariales')를 위한 준비과정을 지원하며, 나아가 집행관이 자신의 실무 수습을 시작하기 전 3개월간의 교육과정도 제공한다.

2) 판사와 검사

모로코에서 판사는 국왕이 지휘하는 최고사법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되며, 특별히 세속적 사법 제도(secular judicial system)하에서의 판사는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변호사 중에서 임명된다. 나아가 1965년 이래 모로코 국민들만 판사가 될 수 있다.³⁴⁾ 그리고 모로코에서는 특이하게 판사에 대한 교육과정이 존재한다. 바로 사법연수대학이 당해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특히 *judicial attaches*라고 불리는 피교육생인 판사에 대한 교육임무를 담당한다. 당해 교육은 2년 의무교육과정이다. 판사직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사법연수원에 입학하기 전에 일정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독립적인 지위를 향유하는 패널이 주관하는 공무원 임용시험에 통과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입학 후 교육기관 동안 평가를 받으며 졸업 전에 최종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나아가 (판사) 선발 시험 지원자에 대한 선(先)-선발(*pre-selection*)은 대학에서의 성과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며, 전형적으로 당해 선-선발을 통하여 지원자의 수를 줄이게 된다.³⁵⁾

34) <http://www.nationsencyclopedia.com/Africa/Morocco-JUDICIAL-SYSTEM.html>, 2011. 9. 20. 최종방문.

35) Legal Vice Presidency The World Bank, MOROCCO - Legal and Judicial Sector Assessment -, 2003, pp. 17, 26~27(당해 자료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접근할 수 있다.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INTLAWJUSTINST/Resources/MoroccoSA.pdf>, 2011. 9. 20. 최종방문).

그리고 모로코에서는 조사업무(investigation)를 담당하는 판사가 있어서 검사의 역할이 제한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IV. 대체적 분쟁해결절차(ADR: Alternative Dispute Settlement)

중재법의 시행이 세계은행의 지원하에 예정되어 있어서 향후 법원의 업무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재(arbitration) 판정을 위한 인가장 발송이 효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만일 그렇다면 이미 합의된 판정 집행에서의 어려움은 물론 모든 판정은 강제집행이 선언되기 전에 권한 있는 법원에 의하여 심사를 받게 될 것이다. 상업적 중재는 아직까지 모로코에서는 성공적이지 못하다. 예를 들어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모로코 지부가 존재하지만 최근까지 중재 사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어서 계약의 결과에 대한 최종 판정은 외국 중재법원에 맡기는 형국이다. 하지만 그에 따라 국내 회사들은 분쟁 해결을 자신들의 내부 네트워크나 지역 상업관습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고, 급기야 이와 같은 내부적 연계는 모로코 내 중개(mediation) 관습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결국 사회적 결속의 강화로 말미암아 공적 자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용자 협회는 노사분규 중개 임시위원회(ad hoc commission for the mediation of labor conflicts)를 설립하기도 하였다.³⁶⁾ 모로코 역시 향후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미소 냉전, 즉 이념 간 경쟁에서 결국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The End of History)’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진화된 가치·이념이라고 주장하였다는 것을 굳이 언급

36) 사실 중개와 중재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중개(mediation)는 제3자로서 두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함으로써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의 의견에 구속력이 부여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중재(arbitration)는 제3자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들어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일로서 제3자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진다. 하지만 양자는 법원에 의한 재판 외 분쟁해결 방법으로서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다.



하지 않더라도 이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바람은 전 인류가 공통적으로 품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로코 역시 그러하다. 입헌군주제라는 선언이 무색하게 이루어지는 국왕의 통치에 대한 시위가 반증하듯이 모로코도 아프리카 대륙의 민주화 바람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상당한 조문을 도입한 이번 모로코 헌법 개정은 그와 같은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와 같은 특징은 오히려 사법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신의 의사로 간주되는 법률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수 있는 헌법재판제도를 도입하였다는 것과 당해 사항을 정하는 헌법의 채택에 있어 국민투표(referendum)를 거쳤다는 것은 국민주권의 실질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로코의 민주화 달성을 갈 길이 멀다. 헌법재판에 있어 도입한 것은 정식의 헌법소송(constitutional complaint)제도가 아닌 국회의 입법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소원일 뿐이며, 나아가 여전히 국왕은 정부, 국회, 법원에 대한 우위의 지위를 점하고 있어 권력분립의 완전한 확립에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 모로코의 사법제도를 비롯한 통치 제도는 아무래도 왕정국가에서 입헌주의 국가로 가는 과도기적인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민주화 시위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것은 입헌주의의 완전한 확립을 위해서임은 물론이다. 향후 모로코의 사법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입헌주의의 확보가 고려될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 지속적인 저항은 결국 모로코 입헌주의의 보다 강화된 형태를 유도할 것이다.